

STEP

1

신청방법

관할 지방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사업 참여 신청시 제출서류

STEP
3

- 1 (공통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 자에 한함)
- 2 근로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승인 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START!

정규직 전환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STEP
2지원
절차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주



심사·승인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

- 1 (공통서류)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으로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 전후 각 대상별 임금
(보수)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2 근로 형태별 지원요건 검토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STEP
4

정규직 전환 지원 누구를 지원하나요?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사업주



- ◆ 비정규직(기간제·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지원요건



-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제외 사업주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다른 기관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가'목), 교육청 등 교육 행정기관 ('나'목), 국회, 감사원 등('다'목)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제외 근로자



-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



- ◆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일부와 장려금 지원

월평균 임금 증가분	지원수준
20만원 미만	월 정액 40만원 지원 (장려금 40만원)
20만원 이상	월 정액 60만원 지원 (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 장려금 40만원)

지원기간



- ◆ 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 지급

지원인원 한도



-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
-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한도 제한 없음